“사랑가득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할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급여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허락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 의 인쇄물을 제공하고 설명 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장기요앙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기재.관리 한다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이고,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계약해지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악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③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진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⑥ 대상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동해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별지1] 2026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20분 이상	43,430	210분 이상	63,530
60분 이상	25,320	150분 이상	50,640	240분 이상	70,080
90분 이상	34,120	180분 이상	57,020		

[표3] 방문요양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금액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의 소정금액에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